

【 상세보기2 】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

公社 인사규정 제13 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1.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